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조문별 제정이유서

1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 신설 (안 제1조의2)

가. 제.개정 이유

-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의 신설

나. 제.개정 내용

- 자가사용 목적의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유통 중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를 매출액,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준을 정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해외통신판매중개자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 및 집행의 예측가능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내용·방법·절차 및 결과 공표·제공·조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의2, 제2조의3, 제2조의4 및 제3조)

가. 제.개정 이유

-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 내용·방법·절차, 결과 공표·제공·조치 등에 대한 사항 위임

나. 제.개정 내용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방법·절차, 안전성조사 결과의 공표·보관, 조사결과 조치 방법 등에 대해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의 안정적인 실시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3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, 조치의 결과보고,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, 제6조의2, 제6조의3, 제6조의4, 제8조, 제11조)

가. 제.개정 이유

- 법에서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및 공표,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 보고 등에 대한 사항 위임

나. 제.개정 내용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등의 조치 권고 절차 및 공표 방법, 조치 결과보고 방법 등에 대해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에 관한 조치 권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절차의 안정적 운용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4.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업무 수행 및 안전정보 제공요청 관련 사항 (안 제15조제1항, 제3항 및 제5항)

가. 제.개정 이유

- 법에서 어린이제품등 시장감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 위임

나. 제.개정 내용

- 안전사고 관련 조사·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시험·분석 업무 의뢰 가능 기관 및 요청 가능한 정보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안전사고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5.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제1항)

가. 제.개정 이유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필요

나. 제.개정 내용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국가기술 표준원장에게 위임되는 권한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6.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면제 및 안전확인신고 업무 관련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18조제2항)

가. 제.개정 이유

- 어린이제품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면제 업무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신고 업무의 적시 대응 및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위탁 범위 정비

나. 제.개정 내용

-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면제 업무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에게, 안전확인신고 업무 관련 권한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어린이제품 안전인증·안전확인신고 면제 업무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신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